

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

○ 위탁가정에서 발생한 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시 위탁부모가 무제한의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아동의 상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,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도모

예산 총괄 (단위 : 천원)

2014예산 (A)	2015예산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83,512	83,512	-	-

사업 설명 (단위 : 천원)

- 사업목적**
 -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위탁가정의 심리적·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동의 보호 증진

- 사업근거**
 - 아동복지법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, 제15조(보호조치), 제35조(건강한 심신의 보존), 제59조(비용의 보조)

- 사업개요**
 - 지원대상 :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, 단 18세 이상이나 고등학교 재학중인 위탁아동도 포함
 - 지원단가 : 1인당 65천원 이내의 보험료 지원
 - 상해보험의 내용
 - 상해보험의 주요 담보원칙
 - 위탁아동의 상해, 질병관련 위험 담보
 - 위탁아동의 배상책임 담보(위탁부모의 민/형사상 책임 최소화)
 - 유괴, 납치 등 외부적인 위험 제거
 - 지급방법 : 사유발생 →보험료청구(자치구) →보험료지급(보험사→구→아동)
 - 사업기간 : 2015. 3.1 ~2016. 2. 28
 - '15년도 소요예산 : 83,512천원
 -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1,285명

추진경위

- 2014. 2월 : 보험가입 대상 아동 선정 및 보험사 계약 체결(LIG외 2곳),
- 2014. 3월 : 보장 개시

2015년도 예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3결산	2014예산(A)	2014예산(B)	증감(B-A)
보험금	89,707	(×41,756) 83,512	(×41,756) 83,512	

2015년도 예산 산출 근거

-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
 - 65,000원×1,285명=83,525천원

사업추진 절차

- 집행절차
 - 서울시 : 보험사 선정(공고) → 보험계약 체결 →보장개시('14.3.1)
 - 자치구 : 보험료 청구사유 발생 →보험료 청구(보험회사) →보험료 지급(보호아동)
- 보험료 납입 : 일시납이 원칙이나 2회 분납 가능
- 추진일정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계획	추진세부내용
상해보험가입계획 수립	2015. 1월		보험대상자조사 및 추진방침 수립
보험사 선정 및 계약	2012. 2월중		공모하여 보험사 선정
보험료 납부	2015. 2월말	83,512	계약 후 보험료 지급
보험개시	2015. 3. 1일 부터		자치구를 통해 보험결과 및 사업안내
보험중간 결산	2015. 10월		신규 보험대상자 추가지원

실·본부·국	부서명	담당자			
여성가족정책실	가족담당관	아동복지팀장	홍우석 (2133-5179)	주무관	문용진 (2133-5183)

-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계획서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.

<http://opengov.seoul.go.kr/sanction>